

## I. 첫머리에

신문, 방송 등 종래의 미디어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증대할 도전을 받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 또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17년 총무성의 정보통신백서의 제1장 제1절의 주제는 “스마트폰 사회의 도래”였다.<sup>1)</sup> 스마트폰 개인 보급률이 2011년의 14.6%에 비해, 2016년에는 56.8%까지 상승하였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률은 2012년의 41.4%에서 2016년에 71.2%까지 상승하였다. 20대에 한정한다면 97.7%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총무성의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sup>2)</sup> 인터넷 사용시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한다.<sup>3)</sup> 스마트폰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종래의 언론매체인 텔레비전을 여전히 정보획득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함으로써 인해 종래의 미디어가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디어간의 경쟁이 조금씩 심화되고 있다.<sup>4)</sup> 이로 인한 미디어의 지나친 영리주의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정보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1960

\* 대법원 재판연구원, 법학박사. issacgcw@gmail.com

\*\*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소 소속 비즈니스법·비교법정연구센터 특임연구원, 법학박사. cyberhb@gmail.com

1) 総務省「平成29年度情報通信白書」.

2) 総務省情報通信政策研究所「平成28年情報通信メディアの利用時間と情報行動に関する調査報告書」(平成29年7月)9頁.

3)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하루에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평일에는 약 170분, 주말에는 약 225분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4) 미디어 개념과 인터넷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浜田純一「メディアの自由・自律と第三者機関」論求ジュリスト2018春号85頁 참조.

년대 중반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하급심 재판례<sup>5)</sup>가 등장한 이래로 명예훼손,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다양한 인격권 침해 사안으로 나타났다.<sup>6)</sup>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이 각종 인격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입법한다거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국가기관 설립을 통한 행정적 해결방안을 도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영역에서 재판을 통해 사안별로 대처하고 있다.<sup>7)</sup>

이하에서는 일본의 언론보도피해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고(II),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여 민사상의 법적 구제에 관해 최근에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III). 그 뒤 논의를 정리하여 일본에서의 논의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IV).

## II. 언론보도피해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 1. 사생활 침해

#### (1) 사생활 보호의 법리형성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된 것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소설 “잔치의 향연(宴のあと)” 사건이다. 해당 소설에서 여성관계 등이 자세히 묘사된 한 정치가가 작가와 잡지사를 상대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제소하였다. 이 판결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이익 내지 권리로 법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sup>8)</sup>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생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생활 상의 사실 또는 그와 같이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사항일 것, ②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

5) 東京地判1964年(昭和39)9月28日民集15卷9号2317頁(宴のあと事件).

6) 이에 관해 고철웅 (2014). 일본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례동향 - 최근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14년 여름호, 52면 이하 참조.

7) 물론 시민사회로부터의 비판 등을 통해 인격권 보호를 위한 각종 미디어의 자주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8) 전계주5) 판결. “이른바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보장 내지 권리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금지나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로 봤을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일 것, ③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일 것(이른바, ‘3요건’)이어야 한다. 이 판결이 등장한 이후로 하급심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판례상 용어로 인정하였다.<sup>9)</sup> 그러나 최고재판소 판결은 범위가 불명확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 대신 “전과를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sup>10)</sup> “함부로 용모·자태를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sup>11)</sup>와 같이 해당 사안의 보호법익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sup>12)</sup>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저명인의 법리, 공공성·공익성 이론 등이 거론된다. 다만, 사생활은 공개 자체가 권리침해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는 달리 진실성의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침해주체에 따라서 사생활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의 알 권리(미디어의 보도의 자유)가 우선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보호 영역이 가장 좁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은 자신들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인격적인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적인 남녀관계조차도 대중에게는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 일반공무원, 대기업경영자, 종교인, 학자 등도 이에 준한다. 다만,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는 평가가 나뉘고 있다.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sup>13)</sup> 연예인의 가족의 경우에는 연예인 본인보다는 사생활이 보다 넓게 보호된다.<sup>14)</sup>

9) 예를 들어 東京地判1987年(昭和62)11月20日判時1258号22頁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적인 사항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이라 표현하였다.

10) 最判1981年(昭和56)4月14日民集35卷3号620頁[前科照会事件], 最判1994年(平成6)2月8日民集48卷2号149頁[逆転事件]. 전자의 판결은 구청장이 변호사로부터 변호사법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정보조회를 요청받아 전과 및 범죄경력 제공한 사건. 이 판결에서 이토 마사미(伊藤正己) 재판관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는 그것이 비록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의 프라이버시로서 법률상의 보호를 받고, 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하게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 전과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라고 판시하였다. 후자의 판결은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사건 및 재판을 다룬 논픽션 작품 “逆転”에 의해 12년 전의 전과가 공표됨으로 인해 피해자가 소를 제기한 사건. 최고재판소는 “전과 등에 관한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법적보호를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하며, “형사사건 내지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사회일반의 관심 내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사건 그 자체를 공표하는 것에 역사적·사회적 의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실명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며 비교형량을 한 뒤, 그 결과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11) 最大判1969年(昭和44)12月24日刑集23卷12号1625頁.

12) 최고재판소도 最判2002年(平成14)9月24日判時1802号60頁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3) 東京地判1968年(昭和43)11月25日判時537号28頁, 東京地判1974年(昭和49)7月15日判時777号60頁 등.

한편, 일본에서는 1985년 이후에 미디어를 상대로 한 프라이버시 소송이 증가하였다.<sup>15)</sup> 예를 들면, 사생활의 공개, 사생활 침해, 카메라 등에 의한 도촬, 소설에 의한 프라이버시 공개,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 공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진주간지를 중심으로 한 옐로(Yellow) 저널리즘의 융성,<sup>16)</sup> 텔레비전 촬영진의 취재를 중심으로 한 팩(pack) 저널리즘의 가열, 시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증대 등이 작용하였다.<sup>17)</sup>

최근에는 인터넷에 의한 사생활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일본 미용의료협회의 홈페이지에 적었는데,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환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론하였다. 환자가 실명을 거론한 점에 대해 항의하자 약 1시간 후에 집도 의사는 스스로 그 반론문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적어도 원고(환자)의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였다.<sup>18)</sup>

사생활이 침해당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받더라도 배상금을 수령하기 힘들 수 있다. 가해자 내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의 한 하급심 사례에서<sup>19)</sup> 주간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사가 형사사건 피고를 도촬한 경우 주간지 발행사의 사장이 회사의 사용자책임과는 별도로 대표이사로서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는 특기할 만하다.<sup>20)</sup>

14) 東京地判1993年(平成5)9月22日判タ843号234頁(여배우의 남편), 東京地判1989年(平成1)6月23日判時1319号132頁(작가의 재혼상대방), 東京高判1990年(平成2)7月24日判時1356号90頁(작가의 재혼상대방).

15) 山田健太 『法とジャーナリズム[第3版]』(学陽書房, 2014)404頁.

16) 대표적 잡지로 『フォーカス』, 『フライデー』가 있다.

17) 山田 전계서 404면.

18) 東京地判2005年(平成17)4月25日2005WLJPCA04250005.

19) 大阪地判2002年(平成14)2月19日判タ1109号170頁. “사내에서 본건 사진 주간지의 취재나 보도행위에 관해 위법 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관리체제를 정비하지 않은 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사로서의 책임(회사법 제429조)을 긍정하였다.

20) 일본 회사법 제429조[이사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① 이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범죄보도와 사생활 침해

일본에서는 범죄보도를 할 때 피의자(용의자) 내지 피고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보도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21)</sup>. 실명보도원칙은 1980년대 이후부터 논의되어 왔다. 30년 이상 논의되어 왔는데 처음 논의될 당시와 2010년대 말인 지금은 주요 관심사가 바뀌었다. 초기에는 피의자에 대한 보도피해를 염두에 두고 익명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된 문제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익명발표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주로 체포당할 때에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는데, 중대한 사건은 체포당시 전후로 연일 집중적으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나 그 후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는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건, 사고 보도의 경우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매체별로 편집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은 대다수의 매체가 공개하고 있다. 물론 이에 관해 1980년대 이후 비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sup>22)</sup>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현재도 여전히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이유는 “범죄는 사회의 병리를 나타내는 거울”로서 행위자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 일반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sup>23)</sup> 사회적 관심이 많은 범죄보도를 할 때에는 피의자 당사자 뿐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과 관계자, 나아가 범죄 피해자와 그 관계자까지 조사하여 보도를 한다. 범죄의 사회적 배경이나 병리를 깊이 파기 위해 범죄나 체포, 자백 등의 사건을 현상적으로 쫓아, 피의자의 성장과정이나 생활, 가족과 친구관계, 성격, 피해자의 울분, 조사실정 등으로 “범죄스토리”를 만들어 흥미위주의 보도가 이루어진다.<sup>24)</sup>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사생활이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것이다. 실제로 요코하마항 모자살인사건 보도에서는 피해자인 부인의 과거 남자관계와 유흥업소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등의 사생활이, 동경전력 여성사원 살해사건 보도에서는 살해여성의 퇴근 후의 사생활이 흥미위주로 보도되었다.<sup>25)</sup>

21) 일본신문협회에서 발간한 “재판원제도 개시에 있어서 취재·보도지침”(2008)에 의하면, 언론의 사건보도의 기능으로 ① 진실해명기능, ② 범죄재발 방지기능, ③ 피해예방기능, ④ 사회적 관심 충족기능, ⑤ 수사 및 재판 권력의 감시기능 등이 있다고 한다.

22) 浅野健一 『犯罪報道の犯罪』(学陽書房, 1984), 三浦和義 『情報の銃弾』(日本評論社, 1989) 등.

23) 山田 전계서 410면.

24) 田島泰彦ほか編 『現代メディアと法』(三省堂, 1998)91頁[田島泰彦執筆].

25) 田島の 상계서 91면.

종래, 사건보도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은 1990년의 한 판결에서 “보도에서 피의자 특징은 범죄뉴스의 기본적 요소이고, 범죄사실 자체와 함께 공공의 중요한 관심사이다”고 하며, “범죄사실의 양태, 정도 및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특징(공인인지 여부), 피해자 측의 피해심정, 독자의 의식, 감정 등을 비교·형량함과 동시에 인권의 존중과 보도의 자유 내지 알 권리 옹호와의 균형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26)</sup> 그러나 최근에는 실명보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후쿠오카(福岡) 고등법원은 중학교 교원이 소녀와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체포된 사실이 실명보도 된 사안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한번 실명으로 보도되면 나중에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판명되거나 혹은 기소되지 않고 절차가 종료한 경우 사후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체포된 사실을 보도해 두고는 후속절차의 경과(항소인이 본 피의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로 처분되었다는 사실 등, 중략)는 더 이상 뉴스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여 이를 보도하지 않는 자세는 보도기관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sup>27)</sup>

살인사건이나 인명피해가 큰 사건 등은 뉴스기사로서 가치가 커서 후속보도를 통해 정정보도를 할 기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절도나 치한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었을 때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다. 따라서 종래 언론은 체포 당시에는 보도가치가 있어 보도하였으나 나중에 불기소나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인권과 보도에 관한 선언”(1987)에서 실명보도의 원칙을 그만두고 익명보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2년 뒤의 “보도의 본연의 자세와 범죄피해의 방지·구제에 관한 결의”(1999)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최근 일본신문협회가 발간한 “실명보도-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2016)는 행정기관 내지 경찰 등의 익명보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실명보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sup>28)</sup> 본서는 익명보도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15년 9월 지진으로 인한 흥

26) 名古屋高判1990年(平成2)12月13日判時1381号51頁.

27) 福岡高裁那覇支判2008年(平成20)10月28日判時2035号48頁.

28) 日本新聞協会『実名報道—事実を伝達するために』(日本新聞協会編集委員会, 2016). 본서는 2006년 12월에 발간된 “실명과 보도”의 개정판이다.

수, 2014년 10월 화산분화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행정기관이 행방불명자의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아 언론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가족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자신의 가족에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를 언론보도를 통해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관계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한다. 또한 2005년 4월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익명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익명보도의 문제점을 거론한 뒤 실명보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다. ① 실명은 육하원칙 중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 ② 실명확인 은 독자적인 취재를 보다 깊게 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는 점, ③ 실명이 있으면 잘못된 정보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기사의 진실성이 담보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언론이 실명으로 보도하게 되면, ④ 실명보도가 가지는 사실의 무게와 힘,<sup>29)</sup> ⑤ 권력부정에 대한 추궁기능, ⑥ 피해사실과 배경을 자신 본연의 입장에서 널리 사회에 알리려는 호소력이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한편 성인과 달리 미성년인 경우에는 언론보도에서 실명공개가 소년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sup>30)</sup> 1997년에 발생한 고베시(神戸市) 아동 연속살상사건에서는 주간지 포커스가 피의자 소년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년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포커스 편집부는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이성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사진공개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보호와 교정”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서 볼 때 사진공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 바,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시점 내지 진실 전달을 위한 저널리즘 고유의 성격과 피의자 소년의 인권 내지 사회적 갱생여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섬세한 이익형량이 필요할 것이다.

피의자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실명 및 얼굴 사진을 보도하여 피의자가 출판사를 상

---

29) 일본신문협회 (2016). <실명보도-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24면 참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으로 보도되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성범죄 피해자의 말은 큰 울림이 있다고 한다.

30) 소년법 61조 “가정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년 또는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인해 공소를 제기당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용모 등으로 그 자가 해당 사건의 본인임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대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소년의 “실명 보도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출판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sup>31)</sup> 그러나 2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 특히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생활상의 사정이나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실명보도 내지는 그에 유사한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 내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와는 별도로, 함부로 실명을 공개당하지 않을 인격적 이익이 법적보호에 합당한 이익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보도대상이 되는 해당 개인에 대해 사회생활상 특별보호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소년법 제61조의 존재를 존중하면서도, 표현행위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동시에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는 위법성을 결여하고, 위법한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취소하였다.<sup>32)</sup>

상기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과 같은 시기에 나온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 판결은 소년법 제61조 해석과 관련해서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살인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미성년피고인(당시 19세)에 관해 법정방청 등으로 정보를 얻어 추측보도(推知報道)를 한 주간지사를 상대로 소년법 위반 및 소년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 및 항소심 판결은 잡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sup>33)</sup> 항소심인 나고야 고등법원은 보도로 인해 침해받은 소년의 피침해이익에 관해 소년법 제61조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 프라이버시”를 헌법상 보장되는 “소년의 성장발달권(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권리)”에 의거하여 법리를 구성하였다.<sup>34)</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년범죄 보도 관련소송은 소년법이라는 특별법과 관련하여 중

31) 大阪地判1999年(平成11)6月9日判時1679号54頁.

32) 大阪高判2000年(平成12)2月29日判時1710号121頁.

33) 名古屋地判1999年(平成11)6月30日判時1688号151頁. 名古屋高判2000年(平成12)6月29日判時1736号35頁. 다만, 이 사건은 최고재판소에서 본건 기사가 소년법 제61조가 금지하는 추측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소년에 관한 명예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 여부에 관해서 피침해이익 별로 개별 구체적인 비교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잡지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되었다(最判2003年(平成15)3月14日民集57卷3号229頁). 최고재판소는 소년법 제61조에 위반하는 추측 보도 여부는 “그 기사 등으로 인해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이 그 자를 해당사건의 본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4) 최고재판소는 “원심이 소년법 제61조에 의해 보호하려고 하는 ‘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권리’도 피침해이익이라고 하여 상기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는지 판결문으로부터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요한 논점을 지닌 문제영역이 되고 있다.<sup>35)</sup>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 및 보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앞으로도 더욱 구체화 될 것이다.<sup>36)</sup>

## 2. 명예훼손

### (1) 명예훼손의 구제법리 형성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는 형법 및 민법의 규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일본 형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人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법 제231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人을 모욕한 자”에게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회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에 의거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31조에 의해 형사적으로 처벌된다. 민사적으로는 일본 민법 제709조와 민법 제71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sup>37)</sup> 민사상의 불법행위법에서도 명예는 사회적 평가라고 해석된다.<sup>38)</sup> 따라서 언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가 훼손되었을 것, 언론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 손해가 발생할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한편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형법에서는 제230조

---

35) 수많은 논문들이 있으나, 예를 들어 広瀬健二「少年法61条で禁じられる推知報道の判断基準」法教277号(2003)103頁, 田島泰彦=新倉修編『少年事件報道と法』(日本評論社, 1999), 松井茂記『少年事件の実名報道は許されないのか』(日本評論社, 2000) 참조.

36) 상기 最判2003年(平成15)3月14日民集57卷3号229頁 참조.

37) 일본 민법 제709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710조 “타인의 신체, 자유 혹은 명예를 침해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둘 중 어느 경우든지 간에 전조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

38) 最判1956年(昭和31)7月20日民集10卷8号1059頁는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란 人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것이다”, 最判1970年(昭和45)12月18日民集24卷13号2151頁는 “명예란 人이 그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에서 받는 객관적인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키는 것”이라 판시하였다.

의 2에서 ① 공공(공익)성, ② 진실성, ③ 상당성이라는 “면책에 관한 3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상에도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최고재판소는 1966년에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오직 공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만약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행위는 고의 혹은 과실이 없고, 결국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이하, 1966년 판결이라 한다).<sup>39)</sup> 학설은 이 판결의 판시사항을 “상당성의 이론” 내지 “상당성의 법리”라 부르며 중요한 면책요건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그 뒤 등장한 판례는 수사당국이 아직 사건보도를 발표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가 진전되고 있던 상황을 언론이 앞서 보도한 사안에서, “신문사로서는 상고인들을 다시 방문하여 취재하는 등 더욱 신중하게 근거를 취재해야 했다”고 판시하며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sup>40)</sup> 이 판결은 언론 측에 엄격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상당성의 법리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있다.<sup>41)42)</sup>

1966년 판결은 사실적시를 통한 상대방의 명예훼손 여부가 다루어진 사안이었다. 이와 달리 의견 내지 논평을 통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sup>43)</sup> 최고재판소는 다음의 판결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다루었다.<sup>44)</sup> 전단지 배부행위가 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

39) 最判1966年(昭和41)6月23日民集20卷5号1118頁. 본 사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가 원고의 학력사칭 등의 의혹이 있고, 살인전과가 있다고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상당성의 법리에 의거하여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지지하였다.

40) 最判1972年(昭和47)11月16日民集26卷9号1633頁.

41) 五十嵐清 『人格權法概説』(2003)49頁, 松井茂紀 『表現の自由と名誉毀損』(2013)23頁. 사실상 경찰의 공식발표 이외에는 보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매우 엄격한 태도라고 비판한다(松井, 같은 면).

42) 하급심에서는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의 실명을 언론이 보도하였는데, 나중에 피의사실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에서, “범죄수사를 하는 경찰서 수사관이 수사결과에 의거하여 판명된 피의사실을 기자회견장 등에서 공표한 경우, 발표내용에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한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고 상당성을 인정하였다(東京地判1990年(平成2)3月23日判時1373号73頁).

43) 東京大学判例研究会 「最高裁判所民事判例研究」 法協109卷11号1810頁(山口成樹執筆).

44) 最判1989年(平成1)12月21日民集43卷12号2252頁. 공립초등학교에서 통지표 양식 및 평가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교육문제에 대해 언론활동을 하던 피고가 교사의 개인정보와 통지표 논쟁에 대

항에 관하여 ② 그 목적이 오직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③ 그 전제사실이 중요한 점에 관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④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는 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판, 논평을 주제로 하는 의견표명”으로서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성을 결여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1989년 판결이라 한다). 이 판결이 등장하기 전의 판례는 사실적시의 경우와 의견 내지 논평의 경우를 나누어 명예훼손 여부를 고찰하지 않았다.<sup>45)</sup> 1989년 판결이 등장한지 8년 후에는 의견표명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이 등장해 상당성의 법리를 보다 심화시키게 된다.<sup>46)</sup>

1997년에 나온 최고재판소 판결은 앞서 본 1989년 판결이 제시한 4개 요건을 판시한 뒤, “비록 이 의견 내지 논평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의 증거가 없을 때에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비교하여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고의 또는 과실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1997년 판결이라 한다). 또한 “의견 내지 논평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특별히 묻지 않고,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 불가결한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두텁게 보장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고 판시하였다.<sup>47)</sup>

1989년 판결은 상당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상당성이 인정되면 면책된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1966년 판결)과 의견표명 명예훼손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1997년 판결에서는 의견표명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진실성·상당성의 경우 면책된다는 법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의견표명 명예훼손 간에 차이를 극복하였다.

---

한 비판, 논평을 실은 진단지를 배부한 행위가 초등학교 교사들(원고)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

45) 예를 들어 最大判1986年(昭和61)6月11日民集40卷4号872頁의 경우, 출판물의 사전금지청구를 한 사안에서 논평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실적시의 경우와 의견 내지 논평의 경우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46) 最判1997年(平成9)9月9日民集51卷8号3804頁. 1981년에서 82년에 걸쳐 로스엔젤레스에서 발생한 총살 및 상해 사건에 관한 석간지(夕刊フジ)의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미우라 카즈요시(三浦和義)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매스컴들이 필요이상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는데(이른바 “로스 의혹”), 미우라 본인이 수많은 소를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47) 最判2002年(平成14)7月15日民集58卷5号1615頁.

오신(誤信)상당성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다. 수사당국이 공적으로 발표한 경우<sup>48)</sup>나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sup>49)</sup>에 관해서는 오신상당성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근거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 정보만을 믿고 그대로 게재한 경우는 오신상당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보도기관이 특별한 조사권한을 가지지 않은 채 신속히 보도를 해야 할 경우, 보도기관으로 하여금 일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도 충분할 경우가 있다.<sup>50)</sup> 민사재판의 경우, 보도기관에게는 취재원(源)의 비밀이 인정되지만,<sup>51)</sup> “보도내용의 진실성 확보 및 그 근거의 상당성에 관해서는 보도내용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수량 및 질 양면에서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보도내용에 따른 전문을 주장하는 자 혹은 주관적 억측에 지나지 않는 해석이나 추정을 하는 자의 말이나 정보, 보도전후의 신빙성을 음미할 기회가 부여되지 못한 익명자의 말이나 이른바 비공식 정보를 근거로 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며, 검사의 비공식 발언을 기사로 한 사안에서 오신상당성은 인정되지 않았다.<sup>52)</sup>

최근 일본방송협회(NHK)가 방영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편집의 자유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등장하였다.<sup>53)</sup>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종군위안부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NHK 제작진의 취재에 응했는데, 편집에 의해 단체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방송이 되어 NHK와 제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최고재판소는 취재대상자의 기대가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협력을 의뢰한 관계업자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수집을 위한 취재를 받은 취재대상자가 취재담당자의 언동 등으로 해당 취재로부터 얻은 소재가 일정한 내용, 방법에 의해 방송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나 신뢰는 원칙적으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취재에 응함으로써 필연적으로

48) 最判1972年(昭和47)11月16日民集26卷9号1633頁.

49) 最判1999年(平成11)10月26日民集53卷7号1313頁.

50) 東京高判1978年(昭和53)9月28日判夕372号85頁.

51) 일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3호(직업의 비밀에 관해 심문 받았을 때 증인은 증언을 거절할 수 있다). 最決2006年(平成18)10月3日民集60卷8号2647頁.

52) 東京地判1988年(昭和63)7月25日判時1293号105頁.

53) 最判2008年(平成20)6月12日民集62卷6号1656頁.

취재대상자에게 현격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취재담당자가 이를 인식한 다음 취재대상자를 상대로 취재로 얻은 소재에 대해 반드시 일정한 내용, 방법에 의해 방송 프로그램 중에 거론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설명이 객관적으로 취재대상자가 취재에 응한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취재대상자가 상기와 같이 기대하고 신뢰한 것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단체는 정치가가 개입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피력했지만 피고 NHK는 일관되게 정치개입은 없었다고 반론하였다. 이 점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넘어간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학설의 비판이 있다.<sup>54)</sup> 이 판결을 통해 표현의 자유, 방송에 의한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sup>55)</sup>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 시민의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접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편집의 자유 내지 현장의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프로그램 관여자는 취재당사자 내지 시민의 요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같은 저널리즘이나 제작현장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TV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등장하였다. 일본방송협회(NHK)는 “NHK스페셜 시리즈 JAPAN 데뷔”라는 시리즈 첫 회에서 “아시아의 ‘1등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1910년 런던에서 개최된 일영박람회에서는 일본의 대만통치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파이완족이 사는 집을 만들어 실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를 하였는데,<sup>56)</sup> 방송에서 대만남부에 사는 선주민인 파이완족 10명 가량이 모인 사진을 보여주며 그 아래 “인간 동물원”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였다. 이에 파이완 족 후손들이 이 방송으로 인해 본인들의 명예 등이 훼손당했다며 일본방송협회

54) 고등법원에서는 “1심 원고들은 정치가 등이 본건 프로그램에 관해 직접 지시하였고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면담할 때, 정치가가 일반론으로서 말한 것 이상으로 본건 프로그램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나 시사점을 주었다고까지는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정치가에 의한 프로그램에 관한 개입, 관여에 대해 엄격한 검증, 체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기에 정치가에 의한 개입을 사실상 시인해 버렸다는 주장으로, 田島泰彦ほか『表現の自由とメディア』

(日本評論社, 2012)34頁[田島泰彦執筆].

55)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에 관해서 最大判1969年(昭和44)11月26日刑集23卷11号1490頁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보도기관의 보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국정에 관여하는 점에 관해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사실에 관한 보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의 보장 아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56)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는 식민지 사람들을 박람회에서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일본도 그런 것을 따라했다고 한다.

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그 배경이다. 1심은 원고의 부친이 전시된 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sup>57)</sup> 그러나 2심은 본건 프로그램에 의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sup>58)</sup> ‘인간 동물원’이라는 말은 인종차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피고는 본건 프로그램에 의해 파이완족을 대표해서 영국에 간 소외의 딸인 원고가 파이완 족 사이에서 받고 있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그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먼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여부는 “일반시청자의 보편적인 주의와 시청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종래 판례법리를 전제로 하면서,<sup>59)</sup> “본건 프로그램을 시청한 일반 시청자는 일본이 약 100년 전인 1910년, 대만통치의 성과를 세계에 보여줄 목적으로 서구열강이 야만적이고 열후한 식민지 인간을 문명화시키고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 행하였던 ‘인간 동물원’이라 불리는 전시를 모방하여, 원고의 부친을 포함한 파이완 족을 일명박람회 데리고 가서 사는 모습을 전시한다는 차별적인 취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다. 본건 프로그램이 적시한 이러한 사실에 의해 일반시청자가 원고의 부친이 동물원의 동물과 같이 다루어져야 하는 자이며, 그 딸인 원고 자신도 그와 같이 다루어져야 할 자로 받아들인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저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sup>60)</sup> 차별적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목받은 사례이나 최고재판소는 일반시청자가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고, “인간 동물원”이라는 표현이 차별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민족과 관련한 미디어의 취급을 둘러싼 논의가 미성숙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비판이 있다.<sup>61)</sup>

57) 東京地判2012年(平成24)12月14日判時2216号61頁.

58) 東京高判2013年(平成25)11月28日判時2216号52頁.

59) 最判2003年(平成15)10月16日民集57卷9号1075頁.

60) 最判2016年(平成28)1月21日裁判集民事252号1頁.

61) 『平成27年度重要判例解説』ジュリスト1505号(2016)25頁[山田隆司執筆].

## (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1990년대 이후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였고, 2010년에 몇 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등장함에 따라 어느 정도 논의가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은 ①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②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혹은 콘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Contents Service Provider, CSP)의 책임여부가 주된 논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①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프랜차이즈를 통한 라면 체인 가맹점을 총괄하는 회사에 대해 켈트집단이라는 등의 취지를 기재한 바,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인터넷 개인이용자에 의한 표현행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우와 같이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오신(誤信)한 것에 대해 확실한 자료, 근거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보다 관대한 요건으로 이 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62)</sup> 이 판시는 最判1969年(昭和44)6月25日刑集23卷7号975頁<sup>63)</sup>의 법리를 따른 것이나, 인터넷 개인이용자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기준의 특수성을 부정하였고, 다른 매체와의 차이를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②의 책임에 관한 판결도 2010년에 2건 등장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노동기준법에 위반한다는 등의 익명의 투고로 인해 한 토목회사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sup>64)</sup>에 의거하여 NTT Docomo에 발신자 정보공개를

62) 最決2010年(平成22)3月15日刑集64卷2号1頁.

63)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신하고, 그 오신한 점에 대해 확실한 자료, 근거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의 고의가 없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64) 원 법률명은 ‘특정전기통신역무(役務)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開示)에 관한 법률’이다. 제4조 제1항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정 전기통신 용도로 제공되는 특정 전기통신 설비를 사용하는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를 상대로 해당 개시관계역무제공자가 보유하는 해당권리의 침해에 관한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해 해당 개시의 청구를 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명백할 때.

2 해당 발신자 정보가 해당 개시를 청구하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외 발신자 정보의 개시를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하에서는 법률 조문, 판결 이외에는 알기 쉽게, 개시(開示)를 공개로, 역무(役務)를 서비스로 번역하기로 한다.

청구한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최종적으로 불특정한 자에게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특정전기통신설비의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발신자와 콘텐츠 프로바이더 간의 통신을 매개하는 경우 프로바이더는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공개청구를 인정하였다.<sup>65)</sup> 이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뿐 아니라, 경우 프로바이더 또한 “개시(開示)관계 역무제공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경우 프로바이더가 “특정 전기통신 역무제공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판례이다.

다음으로 문제된 사안은, 인터넷상 게시판 투고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이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인 KDDI를 상대로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 및 피고가 원고의 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최고재판소는 “개시관계 역무제공자는 침해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개시청구자의 권리침해가 명백하다는 점 등 해당 개시청구가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상기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견 명백하여 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법리를 본건에 비추어 본다면, “본건 투고는 …… ‘미치광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모욕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원고의 인격적 이익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본건 투고 중 원고를 모욕하는 문언은 상기의 ‘미치광이’라는 표현 한 단어 밖에 없고 특별한 근거를 들지도 않고 본건 투고를 한 자의 의견 내지 감상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모욕행위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본건 게시판의 다른 투고내용, 본건 투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권리침해의 명백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재판 밖에서 본건 발신자 정보의 개시

---

65) 最決2010年(平成22)4月8日判タ1323号118頁.

청구를 받은 피고에게 있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다 …… .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 투고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 밖에서 원고로부터의 본건 발신자 정보의 개시청구에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sup>66)</sup>

### III. 민사상의 법적구제에 관한 최근 논의

#### 1. 들어가며

일본 미디어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광범위한 자율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sup>67)</sup> 그 시작은 1945년 이후 연합국 총사령부가 신문사와 통신사 대표를 모아놓고 신문연합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지시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1946년에 “신문윤리강령”이 제정되었고, 이 강령에 따라 일본신문협회가 설립되었다.<sup>68)</sup> 출판에 관해서는 일본서적출판협회가 1957년에 제정된 “출판윤리강령”을, 잡지에 관해서는 일본잡지협회가 1963년에 제정한 “잡지편집윤리강령”을, 출판유통에 관해서는 일본출판증개협회(日本出版取次協會)가 1962년에 제정한 “출판물증개윤리강령”을 각각 만들었다. 방송에 관해서는 일본방송협회(NHK),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 사단법인 일본방송연합회(방송연합)가 1965년에 방송연합 내에 “방송프로그램향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7년에는 제3자기구로서 “방송과 인권 등에 관한 위원회기구(BRO)”를 설치, 2003년 이들을 통합하여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가 발족하였다.<sup>69)</sup>

66) 最判2010年(平成22)4月13日判時2082号59頁.

67) 이하는 松井茂記 『マス・メディア法[第4版]』(日本評論社, 2008)342-343頁에 주로 의거하였다.

68) 일본신문협회는 단체규약에 따라 신문윤리강령에 위반하는 회원신문사의 회원자격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 권한을 한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 ジョン・ミドルトン 「誤報・虚報被害者の救済法—比較メディア法の視点から」法セミ670号(2010)25頁 참조.

69) 2007년에는 BPO, NHK, 민방련의 프로그램 날조로 인해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허위방송이나 방송윤리상 문제를 심사하는 ‘방송윤리검증위원회’를 BPO 내에 설치하였다. 방송인권위원회는 NHK와 민간방송연합회 가맹사에 의해 설립된 방송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관련된 고충처리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1997년에 설립된 것으로 방송윤리의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학자, 변호사, 저널리스트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방송국 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신청인은 먼저 방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국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송국과 인권침해에 대해 협의하여 문제해결이 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서 방송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기한은 방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위원회에 심리를 신청한다. 신청절차

영화에 관해서는 1959년에 “영화윤리규정”이, 비디오에 관해서는 일본비디오 윤리협회가 “영상소프트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자주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 그 외 광고에 관해서도 “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강령”, “잡지광고윤리강령”등 업계의 자율규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의 자율규제가 많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것이고 법적인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자율규제가 일본 사회에 있어서 자유롭고 활발한 언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sup>70)</sup> 자율규제가 오히려 법적 규제보다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다.<sup>71)</sup>

이하에서는 미디어에 의한 침해 받을 경우 당사자가 어떠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침해를 받기 전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 2. 손해배상과 금지 및 삭제청구

### (1) 손해배상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으로 피해자가 사생활이나 명예 등을 침해받을 경우에는 민사상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이란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말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와 비교해서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디어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진 197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손해배상액은 수만 엔에서 수십만 엔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100만 엔을 넘는 판결이 등장했고, 100만 엔 정도가 위자료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1999년 8월에는 집권정당인 자유민주당의 “보도와 인권 등의 이상적 자세에 관한 검

---

관련해서는 방송인권위원회 운영규칙(2007년 3월 일부개정)에서 정한다.

자세히는 일본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 홈페이지([https://www.bpo.gr.jp/?page\\_id=1074](https://www.bpo.gr.jp/?page_id=1074))참조.

70) 많은 신문사가 설치하고 있는 제3자 기관(예를 들어, 마이니치(毎日) 신문사의 ‘열린’신문위원회나 아사히(朝日) 신문사의 ‘보도와 인권위원회’)은 과거의 취재, 보도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하여 윤리수준의 향상이나 장래의 보도피해의 방지에 공헌하고 있다고 한다. ジョン・ミドルトン 「誤報・虚報被害者の救済法—比較メディア法の視点から」法セミ670号(2010)25頁 참조.

71) 자율규제의 일반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松井 상계서 344-346면 참조.

토회”가 매스 미디어를 상대로 인정되는 배상금액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을 계기로 단기간에 정치가, 기업경영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상대로는 고액(500-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등장했다.<sup>72)</sup> 2002년 9월에는 사법연수원의 “손해배상 실무연구회”가 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배상금액의 산정과 관련, 교통사고와 같이 ‘점수제’를 도입하고, ② 배상금액의 평균수준을 500만 엔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등을 배경으로 미디어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고액배상이 많아졌다.

다만, 이러한 고액화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력이 없는 가난한 명예훼손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경제·사회의 제1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터운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고액화는 매스 미디어의 활동을 위축시켜,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매스 미디어의 비판력·추급력을 약화시킨다. 의견 및 정보의 다양성이 위축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sup>73)</sup> 손해배상의 고액화가 야기하는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책요건의 완화, 공익성 요건의 철폐, 상당성 요건에 의한 면책범위의 확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 민법 제723조는 손해배상 대신에 명예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죄광고가 1994년에 헌법상 위헌판결을 받아 금지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과거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여전히 사죄광고가 허용되고 있다.<sup>74)</sup> 손해배상과 함께 사죄광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75)</sup> 인터넷 웹페이지에 작가(피고)가 연재한 일기로 인해 대학교수인 원고와 그 부인이 명예,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당했다며 일기 게재 금지, 위자료 지불, 사죄광고의 게재

72) 예를 들면, 여배우 관련 보도를 하여 문제가 된 주간지에게 500만 엔의 배상명령을 내렸다(東京地判 2001年(平成13)2月26日判タ1055号24頁).

73)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문헌으로, 長谷川貞之ほか編『メディアによる名誉毀損と損害賠償』(三協法規出版, 2011)89頁이하 참조.

74) 最大判1956年(昭和31)7月4日民集10卷7号785頁. 최고재판소 다수의견은 “단순히 사태의 진상을 고발하고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75) 방송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조치로서 ‘사죄방송’뿐 아니라 방송법에 의거한 ‘정정방송’도 명령될 수 있다. 방송법 제9조(정정방송 등) ① 방송사업자가 진실하지 않은 사항의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방송에 의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본인 또는 그 직접 관계인으로부터 방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방송을 한 사항이 진실하지 않은지 여부를 조사하여, 진실하지 않은 것이 판명된 때에는 판명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방송을 한 방송설비와 같은 방송설비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취소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에 대해 진실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막는 것이 아니다.

를 청구한 사례에서, 도쿄(東京)지방법원은 웹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전달성이 높은 방법”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라고 인정하였고, “특히 피고가 관리하는 웹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열람하는자들 사이에는 원고들에 관한 사실이 널리 인식되었을 것이라 추인된다”며,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사죄광고의 게재방법으로는 피고 웹페이지와 일기가 연재되었던 웹페이지 두 군데에 게재하도록 명령하였다.<sup>76)</sup>

## (2) 금지 및 삭제청구

예전부터 사생활(프라이버시) 혹은 명예훼손 등 인격적 이익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청구가 활용되었다. 금지청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의 조치를 법적 구제방법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으로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치 못하고, 또한 침해상황이 계속될 경우 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례상 명예훼손에 관한 구제수단으로서 사전금지청구를 긍정한 것이 이른바 북방저널(北方ジャーナル) 사건이다.<sup>77)</sup> 잡지발행자인 원고는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에서 발행되는 북방저널이라는 잡지(예정부수 25,000부)에 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후보자측이 잡지 발행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한 바, 해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이에 잡지발행자는 후보자, 잡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으나 1심,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최고재판소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금지청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실시하였다.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10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동법 제723조)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의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같이 배타성을 가지는 권

76) 東京地判2011年(平成23)6月30日2011WLJPCA06308009.

77) 最大判1986年(昭和61)6月11日民集40卷4号872頁(북방저널 사건).

리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헌법 제13조)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동 제21조)이 충돌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침해행위로서 그 규제가 허용되는지는 헌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 비판 등”에 관한 사전 금지는 “그 표현이 사인의 명예권에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헌법상 특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표현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오직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니라 하는 점이 명백하고, …… 피해자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떨어지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긍정”되므로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모델소설의 사전금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등장했다. 아쿠타가와(芥川)상 작가인 재일교포 유미리(柳美里)는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된 모델소설(石に泳ぐ魚)을 잡지에 발표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종양이 있는 외모를 가진 재일한국인 3세 젊은 여성인 원고가 살아가는 일생을 쓴 소설이지만 그 묘사방법에 가혹한 부분이 있어 모델 여성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명예감정의 침해를 이유로 작가,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를 청구하였다. 1심과 2심은 위자료와 출판금지 둘 다 인정하였다. 잡지사와 유미리 작가 둘 다 각각 상고하였지만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sup>78)</sup> “공공의 이익에 관계하지 않는 원고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표현내용으로 포함하는 본건 소설의 공표로 인해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원고의 명예, 프라이버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고, 본건 소설의 출판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중대하고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등에 의거한 원고의 각 청구를 인용한 판단에 위법은 없고, 그 판단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 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며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금지청구에 관해서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받은 자는 인격권에 의거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어떤 경우

78) 最判2002年(平成14)9月24日判時1802号60頁(돌에서 해엄치는 물고기 사건). 이 책의 저자는 유미리, <돌에서 해엄치는 물고기>로 2006년 한국에서도 출판되었다(문학동네).

에 침해행위의 금지가 인정되는지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인물의 사회적 지위나 침해행위의 성질에 유의하면서 예상되는 침해행위로 인해 받는 피해자측의 불이익과 침해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받는 침해자측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침해행위가 명백하게 예상되고, 그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고 동시에 그 회복을 사후에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 혹은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다고 인정될 때에 침해행위의 금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추인하였다.

금지청구의 인정여부와 관련, 이 판결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앞의 북방저널 사건의 판례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 명예훼손의 대상이었던 북방저널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명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비교형량을 할 때에 인격권 보호 쪽으로 보다 무게중심이 놓여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저명한 정치가의 딸(외할아버지는 前 총리)이 이혼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sup>79)</sup> 1심은 금지청구를 인정하였으나,<sup>80)</sup> 도쿄 고등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며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혼은 …… 당사자가 선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당사자의 인격에 대한 비난 등 인격에 대한 평가에 항상 관계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부터 사회제도상 시인되고 있는 사상(事象)으로서 일상생활상 아무렇지도 않게 소식을 듣거나 눈으로 보는 정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전금지를 인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금지청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기사, 검색결과 등의 삭제청구 여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인터넷 검색결과 삭제가처분 결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sup>81)</sup> 종래의 판례는 게시판 관리자나 블로그 관리자를 상대로 투고기사의 삭제의무가 문제 되었으나, 이 판결은 매개자인 검색사이트 관리자를 상대로 제소한 사안이었다. 아동매춘을 한 죄로 아동포르노법 위반으로

79) 東京高決2004年(平成16)3月31日判時1865号12頁.

80) 東京地決2004年(平成16)3月19日判時1865号18頁. 피고가 보전이익을 청구한 소송. 항고심은 보전항고 소송.

81) 最決2017年(平成29)1月31日民集71卷1号63頁.

별금형을 받은 사람이 3년이 경과한 후에도 구글(Google)에 이름과 현(県, 일본의 행정구획)명을 넣으면 체포당시의 범죄보도가 검색결과로 여전히 표시되는 것을 문제 삼아 구글을 상대로 검색결과 삭제의 가치분을 청구하였다. 1심은 “한번은 체포 경력이 보도되어 사회에 알려져 버린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갱생을 방해받지 않을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범죄의 성질 등에 따라 다르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거의 범죄를 사회로부터 ‘잊혀질 권리’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82)</sup>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시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sup>83)</sup>

그러나 항고심은 이러한 판시사항을 뒤집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잊혀질 권리’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법률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 요건 및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 (잊혀질 권리)의 실태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 내지 프라이버시에 의거한 금지청구권과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인터넷은 정보 및 의견 등의 유통에 관해 그 양의 방대함 및 내용의 다양함에 더해 수시로 쌍방향적인 유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정보유통수단을 보완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기반의 하나가 되고 있는 점, 또한 방대한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에 이르기까지는 항고인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전문검색형의 로봇형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서비스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둘러싼 현대적인 사회상황을 고려하면, 본건에서 명예권 내지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의거한 금지청구(본건 검색결과 삭제 등 청구)의 인정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삭제 등을 구하는 사항의 성질(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 공표 목적 및 그 사회적 의의, 금지청구자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공표로 인해 금지청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발생의 명백성, 중대성 및 회복곤란성 등 뿐 아니라, 상기와 같은 인

82) さいたま地決2015年(平成27)12月22日判時2282号78頁. 엄밀히 말하면 이 판결 전에 원고의 신청을 인정하여 가치분명령을 인정한 さいたま地決2015年(平成27)6月25日判時2282号83頁이 있다.

83) 이 사건 담당 변호사의 논문으로 神田知宏「さいたま地裁平成27年12月22日決定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の考察」Law&Technology72号41頁 참조.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는 다양한 사안에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시간이 경과하여 공공성이 없어졌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 다거나(札幌地判2015年(平成27)12月7日2015WLJPCA12076001), 은퇴한 여배우의 잊혀질 권리가 문제가 된 사안(東京地判2006年(平成18)7月24日2006WLJPCA07240004), 여고생의 중고 교복, 체조복 등을 파는 직업(ブルセラ)에 종사하여 속옷을 팔던 연예인의 잊혀질 권리 등이 문제가 된 사안(東京地判2003年(平成15)6月20日2003WLJPCA06200005) 등이 있었다.

터넷이라고 하는 정보공표 내지 전달수단의 성격이나 중요성, 나아가 검색서비스의 중요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전제로 “본건 범행(아동매춘행위)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 등의 관점에서 그 방지 및 규제의 철저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행위이고 특히 여자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관심사인 것은 명확하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성질로 본다면, 그 발생 시부터 이미 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원고가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납부를 끝낸 뒤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형의 선고의 효력이 유효한 것(형법 제34조의2 제1항)을 고려하면, 본건 범행은 여전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며,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보호가 우월하다고 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의거한 본건 검색결과와 삭제 등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최고재판소는 과거의 판례를 인용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은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 “검색사업자가 어떤 자에 관한 조건에 의한 검색청구에 응하여, 그 자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포함하는 기사 등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URL 등 정보를 검색결과와 일부로서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성질 및 내용, 해당 URL 등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 그 자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이 전달되는 범위와 그 자가 입는 구체적 피해의 정도, 그 자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상기 기사 등의 목적이나 의의, 상기 기사 등이 게재될 때의 사회적 상황과 그 후의 변화, 상기 기사 등에서 해당 사실을 기재할 필요성 등, 해당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과 해당 URL 등 정보를 검색결과로서 제공하는 이유에 관한 제반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결과, 해당 사실을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이익이 우월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색사업자를 상대로 해당 URL 등 정보를 검색결과로부터 삭제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비교형량에 있어서 ‘명백성’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즉, 피해자의 인격권)과 검색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얻어지는 이익(즉, 검색엔진의 권리)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우월성이 명백한 경우라야만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이 보호된다는 것으로서 검색엔진의 권리 측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요

건은 근래 하급심 판결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sup>84)</sup>

### 3. 반론권

일본에서 반론권은 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인정되지 않고,<sup>85)</sup> 또한 반론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의 우려가 강하다는 것이 일본에서의 통설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sup>86)</sup> 이러한 견해는 “반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거한 것으로,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한국에서의 반론권에 관한 이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87)</sup> 이하에서 일본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

반론권은 매스 미디어의 보도로 인해 비판·공격을 받는 자(보도피해자)에게 무료로 동일한 매스 미디어의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분량·시간의 반론·반박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sup>88)</sup> 반론권은 19세기에 시민혁명을 거쳐 언론·출판의 자유를 획득한 역사를 가지는 프랑스 및 독일에서 인격권의 보호, 구제를 목표로 언론의 난립이나 정부비판에 대한 억제를 의도하여 생성되었다. 이러한 생성배경에 비해 오늘날에는 언론 억제적 성격을 탈피하여 인격권의 보호, 구제에 그치지 않고, 매스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나 사상·정보의 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반론권의 이러한 측면은 일반국민이 매스 미디어를 상대로 자기의 의견발표의 장의 제공을 요구하는 권리인 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의 이념에 부합한다.

일본에서 반론권 제도는 신문지 발행조목(新聞紙發行条目, 1873년)에서 프랑스법의

---

84)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타나기 전인 札幌地決2016年(平成28)4月25日2016WLJPCA04256006, 그 항고 심인 札幌高決2016年(平成28)10月21日2016WLJPCA10216001, 名古屋地判2016年(平成28)7月20日2016WLJPCA07206013에서도 명백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85) 일본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모든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② 검열은 이를 금지한다. 통신의 비밀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86) 曾我部 전계서 9頁.

87) 현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88) 반론문을 게재할 때에 무상이 원칙이나,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 유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법례도 있다(프랑스 1881년법 제13조 제3항 등). 曾我部真裕 『反論權と表現の自由』(有斐閣, 2013)6頁注1) 참조.

영향을 받아 처음 시작되었다.<sup>89)</sup> 그러나 그 뒤 신문지 조례(1875년)를 정하여 신문지 발행조목이 폐지됨에 따라 반론권 제도도 폐지되었다. 현재에도 반론권이 법적인 제도로서 보장이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아래 최고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반론권이 다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1973년 자민당이 산케이(産経) 신문에 공산당을 야유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공산당이 산케이 신문에 반론문의 무상게재를 요청하였다. 산케이 신문이 이를 거절하자 공산당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반론권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1심과 2심은 명예훼손의 구제방법으로 반론문 게재여지를 인정하였지만, 자민당의 악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원고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최고재판소는 ① 인격권 또는 조리를 근거로 하는 이른바 반론문 게재청구권의 성립여부와 ② 신문지 상에서 정당간의 비판·논평에 관한 의견광고에 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전자에 관해서는 “신문기사에 거론된 자가 그 기사게재로 인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자기가 기사에 거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을 발행·판매하는 자를 상대로 해당 기사에 관한 자기의 반론문을 무수정으로 게다가 무료로 게재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반론권의 제도는 기사에 의해 자기의 명예를 훼손당하였거나 혹은 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해 잘못된 보도를 당하였다는 자에게 있어서는 같은 신문지상에 자기의 반론문 게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원 기사에 대한 자기주장을 독자에게 호소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제도로 인해 명예 혹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인정될 때에는 신문을 발행·판매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원 기사가 바람직하고 반론문이 잘못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경우라도 혹은 반론문의 내용이 그 편집방침에 의하면 게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게재를 강요받는 것이고, 이러한 부담이 비판적 기사, 특히 공적사항에 관한 비판적 기사 게재를 주저하도록 만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험에 연결될 우려도 다분히 존재한다. 이처럼 반론권의 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

89) 반론권에 관한 대표적 문헌으로는 韓永学 『報道被害と反論権』(明石書店, 2005), 曾我部真裕 『反論権と表現の自由』(有斐閣, 2013) 참조. 한영학 (2010). 일본에 있어서 반론권의 연혁과 현상.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146면 이하도 참조.

를 가지는 신문 등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록 피상고인이 발행하는 산케이 신문 등 전국 일간지에 의한 정보제공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기사가 특정한 자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론권의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성문법이 없는 바, 반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상고인 주장과 같은 반론문 게재청구권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90)</sup>

다음으로 후자에 관해서는 앞서 본 북방저널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신문사가 신문 지상에 게재한 정당의 의견광고가 다른 정당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노린 것이고, 다른 정당을 비판·논평하는 내용의 것이나 동시에 그 기사 중에 다른 정당의 강령 등의 요약 등이 일부 꼭 타당하거나 또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요약을 위한 강령 등의 인용문언 자체는 원문 그대로이고, 요점을 제외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등 원심의 사실관계 하에서는 그 광고게재는 광고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오직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고 동시에 주요한 점에서 진실의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표적 학설은 산케이 신문사건에서 원고가 경제적 자유의 독점규제의 논리로 반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언론의 영역에서 반론권이 문제가 될 때에는 사인=출판자에 의한 방해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출판자에게 다른 사인의 언론활동의 장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 동일하게 ‘실질적 자유’의 관철이라는 것이 표방되는 경우라도 경제의 영역에서 독점규제의 경우와 내용은 다르다”고 지적하며<sup>91)</sup> 반론권을 액세스권적으로 이해하고 있다.<sup>92)</sup>

한편, 인터넷 상의 발언에 대한 반론은 “대항언론”이라는 문제로 검토되고 있다.<sup>93)</sup> 대항언론이란 언론에 의한 병폐에 대해서 더욱 더 언론(more speech)으로 대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항언론이 기능하지 않는 경우에 이르면 법적인 구제를 인정하게

90) 最判1987年(昭和62)4月24日民集41卷3号490頁(산케이신문 의견 광고사건).

91) 樋口陽一 『司法の積極性と消極性』(勁草書房, 1978)134頁.

92) 曾我部 전개서 4면.

93) 安永正昭 「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名誉・プライバシー侵害からの法的保護の現状」 民商133卷4=5号(2006) 588頁.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대항언론이 효과를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반론자의 불특정성, 반론장소의 불특정성, 대항언론에 의한 위법성 조각 가능성 등이다.

신문지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반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본인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게시판에서 대항언론을 하는 자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아무런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마치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할 수도 있다. 대항언론을 인정한다는 것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항언론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 본인은 의도치 않게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인터넷의 특성상 반론장소 역시 불특정하므로, 가해자의 글이 여러 사이트에 걸쳐 게재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가 대항언론으로서 한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 그것이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항언론으로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한다.

한 하급심 사례에서는 인터넷상 의견교환을 하는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었다.<sup>94)</sup> 원고는 소외 갑의 발언에 대해, 피고 인터넷 운영관리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제소했다. 도쿄지법은 대항언론에 관하여 “언론에 의한 침해에 관해서는 언론으로 대항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충분한 반론을 하여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인터넷 매체는 “피해자의 반론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갑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항언론을 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에 착안한 것으로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 기존의 종이 매체에서의 반론과는 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인터넷 상의 대항언론 내지 반론에 대해서는 판례의 집적을 통해 보다 논의가 세밀화 될 필요가 있다.

---

94) 東京地判2001年(平成13)8月27日判時1778号90頁.

## IV. 끝머리에

이상 본문에서는 일본의 언론보도피해와 민사법상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판례 동향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과 금지 및 삭제청구, 반론권을 비롯한 민사상의 법적 구제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은 언론보도피해와 민사법상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사한 측면도 많이 있는 반면, 다른 측면도 많이 존재한다.

먼저 양국의 유사한 측면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사생활의 법적 보호에 관해서는 사생활 자체가 민사상의 보호이익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점, 사생활이 침해되었을 경우, 사생활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법적 이익과 표현의 자유로서 공개되어야 할 법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한쪽이 우월할 경우에 보호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를 판례로 채택하고 있는 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규정하고, 공공성(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의 면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 법리도 한국과 일본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95)96)</sup> 또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민사법상의 대응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 금지청구, 삭제청구 등을 들 수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법리가 다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다른 측면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으므로 이하 몇 개만 열거해 본다. 먼저, 사생활 보호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헌법 제17조<sup>97)</sup>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개인의 존중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3조<sup>98)</sup>(한국 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조문)에 의거하고 있다.<sup>99)</sup>

---

95)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중요 선례인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은 ‘공익성’과 ‘진실 또는 상당성’의 법리를 채택하였고, 그 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은 상기 1988년 판결을 세밀화하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96) 김재형 (2012). <언론과 인격권>. 서울: 박영사, 284면 주8)에서도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등 상당성의 증명문제를 고의, 과실 문제로 보는 판례가 일본 판례(最判1966年(昭和41)6月23日民集20卷5号1118頁)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97)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98) 일본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 최대한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99) 통설적 견해. 한편 민법학의 관점에서 사생활의 법적 근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

다음으로 한국에서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를 인정한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이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인신공격적 표현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다. 반면, 본문에서 본 인간 동물원과 관련한 最判2016年(平成28)1月21日裁判集民事252号1頁에서는 차별적 언행에 대해 명예훼손의 법리로서만 문제를 다루었고, 불법행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sup>100)</sup>

민사법상의 구제수단 중 반론권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반론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반론권이 현실적인 구제제도로서 이용되고 있다.<sup>101)</sup>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이외에 사죄광고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반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명예회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한국에서는 판례상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인터넷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삭제여부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판결(最決2017年(平成29)1月31日民集71卷1号63頁)이 등장하여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언론보도피해에 관한 민사법상의 대응방안이 법리적으로 이미 일정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법리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비판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의미 있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다른 개별 테마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다. 한 유력 학자는 사생활은 사회생활의 문맥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이 상정하는 문맥과 다른 문맥에 투입되는 것이 피침해권리·이익의 핵심이라 한다(水野謙「プライバシーの意義に関する序論的考察」学習院大学法学会雑誌45卷2号(2010)1頁).

100) 물론 이는 외양상 그렇다는 것이고, 원고, 피고의 주장 및 입증 등 보다 상세한 검토를 통해 비교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101)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등.

## 참고 문헌 REFERENCE

- 고철웅 (2014). 일본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례동향-최근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14년 여름호
- 김재형 (2012). <언론과 인격권>. 서울: 박영사
- 유미리 (1994). 石に泳ぐ魚. 한성례 (역) (2006)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경기: 문학동네
- 한영학 (2010). 일본에 있어서 반론권의 연혁과 현상.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 浅野健一 『犯罪報道の犯罪』(学陽書房, 1984)
- 五十嵐清 『人格権法概説』(2003)
- 神田知宏 「さいたま地裁平成27年12月22日決定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の考察」 Law & Technology72号
- ジョン·ミドルトン 「誤報·虚報被害者の救済法—比較メディア法の視点から」 法セミ670号(2010)
- 総務省 「平成29年度情報通信白書」
- 総務省情報通信政策研究所 「平成28年情報通信メディアの利用時間と情報行動に関する調査報告書」(平成29年7月)
- 曾我部真裕 『反論権と表現の自由』(有斐閣, 2013)
- 田島泰彦 = 新倉修編 『少年事件報道と法』(日本評論社, 1999)
- 田島泰彦ほか編 『現代メディアと法』(三省堂, 1998)[田島泰彦執筆]
- 田島泰彦ほか 『表現の自由とメディア』(日本評論社, 2012)[田島泰彦執筆]
- 東京大学判例研究会 「最高裁判所民事判例研究」 法協109卷11号[山口成樹執筆]
- 日本新聞協会 『実名報道—事実を伝達するために』(日本新聞協会編集委員会, 2016)
- 韓永学 『報道被害と反論権』(明石書店, 2005)
- 長谷川貞之ほか編 『メディアによる名誉毀損と損害賠償』(三協法規出版, 2011)
- 浜田純一 「メディアの自由·自律と第三者機関」 論求ジュリスト2018春号
- 『平成27年度重要判例解説』ジュリスト1505号(2016)[山田隆司執筆]
- 樋口陽一 『司法の積極性と消極性』(勁草書房, 1978)
- 広瀬健二 「少年法61条で禁じられる推知報道の判断基準」 法教277号(2003)
- 松井茂記 『少年事件の実名報道は許されないのか』(日本評論社, 2000)
- 松井茂記 『マス·メディア法[第4版]』(日本評論社, 2008)
- 松井茂紀 『表現の自由と名誉毀損』(2013)
- 三浦和義 『情報の銃弾』(日本評論社, 1989)

水野謙 「プライバシーの意義に関する序論的考察」 学習院大学法学会雑誌45卷2号(2010)  
安永正昭 「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名誉・プライバシー侵害からの法的保護の現状」 民商133卷  
4=5号(2006)山田健太 『法とジャーナリズム[第3版]』(学陽書房, 2014)

#### 온라인 자료

일본 방송윤리·프로그램 향상기구 홈페이지.

URL: [https://www.bpo.gr.jp/?page\\_id=1074](https://www.bpo.gr.jp/?page_id=1074)

#### 국내법령

대한민국 헌법

민법

#### 국내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 일본법령

일본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특정전기통신역무(役務)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開示)에 관한 법률

소년법

회사법

## 일본판결

最大判1956年(昭和31)7月4日民集10卷7号785頁  
最判1956年(昭和31)7月20日民集10卷8号1059頁  
最判1966年(昭和41)6月23日民集20卷5号1118頁  
最判1969年(昭和44)6月25日刑集23卷7号975頁  
最大判1969年(昭和44)12月24日刑集23卷12号1625頁  
最判1970年(昭和45)12月18日民集24卷13号2151頁  
最判1972年(昭和47)11月16日民集26卷9号1633頁  
最判1981年(昭和56)4月14日民集35卷3号620頁  
最大判1986年(昭和61)6月11日民集40卷4号872頁  
最判1987年(昭和62)4月24日民集41卷3号490頁  
最判1989年(平成1)12月21日民集43卷12号2252頁  
最判1994年(平成6)2月8日民集48卷2号149頁  
最判1997年(平成9)9月9日民集51卷8号3804頁  
最判1999年(平成11)10月26日民集53卷7号1313頁  
最判2002年(平成14)7月15日民集58卷5号1615頁  
最判2002年(平成14)9月24日判時1802号60頁  
最判2003年(平成15)3月14日民集57卷3号229頁  
最判2003年(平成15)10月16日民集57卷9号1075頁  
最決2006年(平成18)10月3日民集60卷8号2647頁  
最判2008年(平成20)6月12日民集62卷6号1656頁  
最判2010年(平成22)4月13日判時2082号59頁  
最決2010年(平成22)4月8日判夕1323号118頁  
最決2010年(平成22)3月15日刑集64卷2号1頁  
最判2016年(平成28)1月21日裁判集民事252号1頁  
最決2017年(平成29)1月31日民集71卷1号63頁  
東京高判1978年(昭和53)9月28日判夕372号85頁  
名古屋高判1990年(平成2)12月13日判時1381号51頁  
大阪高判2000年(平成12)2月29日判時1710号121頁  
名古屋高判2000年(平成12)6月29日判時1736号35頁  
東京高決2004年(平成16)3月31日判時1865号12頁  
福岡高裁那覇支判2008年(平成20)10月28日判時2035号48頁

東京高判2013年(平成25)11月28日判時2216号52頁  
札幌高決2016年(平成28)10月21日2016WLJPCA10216001  
東京地判1968年(昭和43)11月25日判時537号28頁  
東京地判1974年(昭和49)7月15日判時777号60頁  
東京地判1987年(昭和62)11月20日判時1258号22頁  
東京地判1988年(昭和63)7月25日判時1293号105頁  
東京地判1989年(平成1)6月23日判時1319号132頁  
東京地判1990年(平成2)3月23日判時1373号73頁  
東京高判1990年(平成2)7月24日判時1356号90頁  
東京地判1993年(平成5)9月22日判夕843号234頁  
大阪地判1999年(平成11)6月9日判時1679号54頁  
名古屋地判1999年(平成11)6月30日判時1688号151頁  
東京地判2001年(平成13)2月26日判夕1055号24頁  
東京地判2001年(平成13)8月27日判時1778号90頁  
大阪地判2002年(平成14)2月19日判夕1109号170頁  
東京地判2003年(平成15)6月20日2003WLJPCA06200005  
東京地決2004年(平成16)3月19日判時1865号18頁  
東京地判2005年(平成17)4月25日2005WLJPCA04250005  
東京地判2006年(平成18)7月24日2006WLJPCA07240004  
東京地判2011年(平成23)6月30日2011WLJPCA06308009  
東京地判2012年(平成24)12月14日判時2216号61頁  
さいたま地決2015年(平成27)12月22日判時2282号78頁  
さいたま地決2015年(平成27)6月25日判時2282号83頁  
札幌地判2015年(平成27)12月7日2015WLJPCA12076001  
札幌地決2016年(平成28)4月25日2016WLJPCA04256006  
名古屋地判2016年(平成28)7月20日2016WLJPCA07206013